

부서장	합의			상무	대표이사
	경영기획부	경영지원부	직원만족부		
이영훈	정재익	고창훈	양희탁	이영훈	이영훈

문서번호 : 그룹사 IT 운영부-

2024.4.30.

수신 : 내부결재

(보존기간 : 년)

제목 : 고객정보관리규정 폐지 및 개인정보관리규정 제정(안) 승인

내부통제총괄 책임자	감사
WY	김상덕

기록필  
4/30

## 1. 사유

- 고객정보로 한정되어 개인정보 관리를 반영하지 못한 기존 규정 폐지 후 신규 규정 제정
- 「개인정보보호법」 최신 개정 내용 반영

## 2. 내용

- 최신 개인정보보호법(2024.3.15.)을 반영한 신규 규정 제정
  - : 기존 규정은 고객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나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로 관리 범위 확대 (기존 30 조항에서 39 조항으로 항목 증가)
- 주요 변경 항목

「고객정보관리규정」 삭제 조항	「개인정보관리규정」 신설 조항
제 8조 고객정보 제공범위 및 방법	제 11조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내역의 통지
제 12조 고객 본인확인 등	제 17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 14조 고객정보 보관 · 관리 등	제 21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 15조 고객정보의 명세화 금지	제 25조 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 21조 고객정보의 접근 통제 등	제 26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 29조 고객정보 관련 전산시스템 등	제 27조 안전조치의무
제 30조 주무부서	제 34조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 차단
	제 38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4. 개정 시행일 : 2024.5.13.

붙임 1. 「개인정보관리규정」 제정전문(안) 1부.

붙임 2. 신구 규정 조항 비교 1부. 끝

# 개인정보관리규정

2024. 5. 13. 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KB 데이터시스템(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불법열람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 있다.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가목 또는 나목을 제 2호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 (적용범위)

- ② 이 규정은 회사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전반을 적용 범위로 한다.
- ② 「금융지주사법」 제 48 조의 2에 관한 사항은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7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 5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4 호부터 제 5 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회사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 4 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 5 조제 3 항 또는 제 7 조제 3 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⑤ 회사는 제 4 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4 항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 28 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제 29 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제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① 회사는 개인정보를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7 조제 1 항 및 제 26 조제 1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 7조제 2항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 1항제 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서면 · 전자우편 · 전화 · 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④ 회사는 제 10조제 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과 제 11조제 1항에 따른 이용 · 제공 내역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⑤ 회사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회사는 제 3항에 따라 알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 12조 또는 제 37조제 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 제11조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내역의 통지)

① 회사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 내역이나 이용 ·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 13조, 제 13조의 2, 제 13조의 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제 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 제12조 (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회사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본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④ 회사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중요한 내용을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거나 동의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민감정보
    - 나.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⑤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⑦ 회사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①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

### 제 3 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제15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회사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회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7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 제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회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7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 제17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③ 회사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회사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회사가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제21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① 회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 할 때, 회사의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회사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2. 회사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 2 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신는 방법

#### 제22조 (업무계약 등)

- ① 회사가 컨설팅, 제휴, 용역 등을 위해 외부업체와 업무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관리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계약업체 직원이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기술적 방법에 의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의 ID, Password 등이 외부업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회사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관리자"는 업무계약 등으로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관련법률 및 규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 제 4 장 가명정보 처리

### 제25조 (가명정보의 처리 등)

- ① 회사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 27 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통제해야 한다.
- ④ 회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 3 자 제공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기간(제 4 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 3 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 4 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⑥ 회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회사는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제 7 조부터 제 9 조까지의 규정 및 제 7 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 27 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회사가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 1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

⑥ 회사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본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 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본조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 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로 본다.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0.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2. 제 27 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②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본조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회사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 2 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제2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 1 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제 28 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 3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훼손,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③ 회사는 필요 시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서약서"(별지서식 2)에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서약토록 할 수 있다.

#### 제33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① 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 · 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 ·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 ·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

## 제 7 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①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열람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 ① 제 35 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회사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 1 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⑤ 회사는 제 2 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 · 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